

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1375호, 2009.3.27. 공포·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여 도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제4호)
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.
- 별표 2에서 규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삭제하고, 본문에 규정함(안 제6조제4항)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함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함(안 제2조제4호)

-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함.

나.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신설(안 제6조제4항)

- [별표 2] 에서 규정했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삭제하고 본문에 규정
- **본 개정 조례안**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